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632

발의연월일: 2024. 8. 8.

발 의 자:윤준병·염태영·임미애

황명선 • 서삼석 • 문대림

이병진 • 이기헌 • 신정훈

문정복 • 이원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재해대책과 각종 지원책을 통해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재해대책 수립과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드는 비용은 예산상 사유로 실제 피해액보다 적게 책 정되어 농어민의 피해에 대한 보조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 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더욱이,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 조성·운용되고 있지만, 농어업재해에 따른 피해 전반에 대한 지원 성격이 아닌 재보험사업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는 만큼 재해대책수립과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 지원은 물론,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금 지급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안정적인 기금 확보 및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어업재해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여 안정적·체계적 기금 확보를 통해 농어업재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부터 제4조의8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 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33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 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34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 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부터 제4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농어업재해기금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 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재해 대책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0 조에 따른 재보험사업(이하 "재보험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재원 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한다.

제4조의4(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출연금
- 2. 다른 회계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 3.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 4. 제2항에 따른 차입금
- 5. 기금의 운용수익금
- 6.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받은 재보험료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
- 7.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 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제6항제7호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다른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제4조의5(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 1. 재해대책 수립 및 재해에 대한 보조 및 지원
 - 2.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3.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보험금의 지급
 - 4.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한다) 의 지출
 -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재해 대책 또는 재보험사업을 유지·개선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비의 지출
- 제4조의6(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 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리·운용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재보험사업에 한정한다)를 농업정책보

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의7(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4조의8(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 ② 기금의 결산결과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1조에 따른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은이 법에 따른 농어업재해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1호 중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재해대책법」"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조의3(농어업재해기금의 설치)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u>
	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재해 대책 및 「농어업재해보
	험법」 제20조에 따른 재보험
	사업(이하 "재보험사업"이라 한
	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u><신 설></u>	제4조의4(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
	<u>다.</u>
	<u>1. 정부출연금</u>
	2. 다른 회계나 다른 기금으로
	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u>기부금</u>
	4. 제2항에 따른 차입금
	5. 기금의 운용수익금
	6.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0
	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받은 재
	보험료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

- 7.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 터 받은 전입금
- 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제6항제7 호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 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 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금 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제4조의5(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 1. 재해대책 수립 및 재해에 대한 보조 및 지원
 - 2.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신 설>

<신 설>

<신 설>

- 3.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0 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보험 금의 지급
- 4.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포함한다)의 지출
-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재해대책 또는 재보험사업을 유지·개선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제4조의6(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관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 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 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 의 일부(재보험사업에 한정한 다)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리 • 운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4조의7(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 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 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 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 조의6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 리 · 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 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 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 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 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 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 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 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 무원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의8(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신 설>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결과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 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 족할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 에서 보전할 수 있다.